

kiri Weekly

2012.01.30 제167호

이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와 개선 방향

포커스

자동차사고 통지지연 현황 및 특징

금융보험 해설

자본시장제도 이해(7): The Volcker Rule(볼커룰)

국내금융 뉴스

금감원,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 발표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국 경제지표 회복신호 등장

유럽 _ IMF,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_ IMF, ECB에 그리스 정부부채 문제 확대를 막기 위한 손실 분담 촉구

일본 _ 손보재팬과 니혼코아 합병으로 일본 최대 손보사 탄생 예정

중국 _ 2011년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 8.9% 기록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와 개선 방향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금융위원회는 2011년 12월 1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 금융지주회사, 은행, 자산 2조 원 이상의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자산 3,000억 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적용대상임.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제도, 임원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경영진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고함.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여 이들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여야 함.
 - 주식취득에 의한 금융회사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과 대주주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이 유지되도록 함.
 - 미등기 임원이라도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는 임원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부과하여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상근임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도록 함.
- 이번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통합하여 규율함에 따라 금융권역 간·개별회사 간 지배구조 차이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가 비록 예금자·계약자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나,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아닌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규제를 통해 이미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동 통합법 체계는 장기적인 사업모형과 부채평가의 어려움으로 보험회계 및 세리적 전문성이 의 사결정에 필요한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적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1년 12월 15일 입법예고함.
 - 동 법 제정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0년 3월부터 관련 금융권역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의견을 모은 바 있음.
 - 또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를 통하여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마련함.
 -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동 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제정(안)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나. 지배구조법의 도입배경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그동안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각 금융업권의 개별법에서 규율하여 왔는데, 이에 따라 일관성의 부재에서 오는 규제차익의 문제가 대두됨.
 - 따라서 이번 제정(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규율에 대해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규제차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심화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금융안정위원회¹⁾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²⁾ 등 국제기구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그리고 금번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의 경우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높아진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제도화된다는 의미를 가짐.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수용과 CEO 선임 및 승계를 둘러싼 경영진 사이의 마찰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상호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회사 감독의 문제점과 함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점도 지목됨.
- 본고는 이처럼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이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제도, 임원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자산 2조 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자산 3,000억 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적용됨.
 - 단,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수,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 성과보수 지급 및 보수관련 공시, 소수주주권 등의 적용을 면제함.

1) Financial Stability Board(FSB), "FSF Principles of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April, 2010.

2)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BCBS), "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October, 2010.

가. 이사회 권한 강화

■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사회 권한을 명시하고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경영진 감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 시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동시에 사외이사 수가 총 이사 수 중 과반수³⁾가 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현행 1/2 이상보다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
- 금융회사 상근임직원과 비상임이사가 해당회사 또는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냉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표 1〉 제정(안)의 사외이사 관련 주요내용

현행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이상(은행은 과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금융회사 제외 · 지주: 1,000억 원 미만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반수(전업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금융회사(등록제 제외): 사외이사 1/4 이상 · 지주: 전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회사, 계열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근임직원 · 냉각기간: 2년 • 금융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근임직원 · 냉각기간: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회사, 계열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근임직원, 비상임이사 · 냉각기간: 3년 - (현행과 동일) (전업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근임직원, 비상임이사 · 냉각기간: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자료: 금융위원회(2011.12.15),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금융 관련 지식 및 실무경험과 경영, 법률, 회계 등에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명시함.
- 현재 은행권에만 해당되는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시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제정 및 공시의무를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하며, 이에 따른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함.

3)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 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함.

-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부터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선임 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
- 사외이사가 대표가 되고 총 위원 중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3인 이상의 사추위를 설치하여 추천받은 사외이사 후보자들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함.
-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⁴⁾ 추천의 사외이사후보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함.

〈표 2〉 제정(안)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관련 주요내용

현행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수: 2인 이상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이사로만 구성(사내·비상임 이사 참여 가능) - 사외이사 비중: 1/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상법」(12.4월 시행)은 과반수(상장회사)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수: 3인 이상 • 사내·비상임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참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사외이사 비중: 과반수 - 사추위 구성 등은 정관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주주*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분의 50 이상 보유 주주 - (은행, 금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주주*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전업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추천과정의 자기투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추천과정의 자기투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투표 금지

자료: 금융위원회(2011.12.15),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결의에 대해 자기 의결권 행사 금지
-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

4)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 보유자(제정(안)제32조제4항)임.

나.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강화

- 또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위원회의위원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가 맡음.

-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의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2/3 이상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됨.
 -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은 사추위에서 재적 2/3 찬성으로 의결함.
 -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고 선임·해임 의결 시 3% 규정⁵⁾이 적용되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여 현행 「상법」에 따른 일괄선출방식보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⁶⁾함.
 -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조력 필요 시 동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하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함.

6) 일괄선출은 A, B, C, D, E를 이사로 선임(일괄선출)한 후 그 중 A, B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며 A, B 감사위원 선임 시에 만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는 방법인 반면, 분리선출은 A, B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3% 의결권 제한)과 C, D, E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의결권 제한 없음)을 분리하여 결정하는 방법임.

〈표 3〉 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관련 주요내용

현행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금투, 저축)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상법」(상장회사)은 상근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3% 초과 의결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권 확대) •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 선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상법」(상장회사): 일괄선출 방식(주총에서 이사 선임 후 동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 선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선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 후보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지주) • 구성: 전원 사외이사 • 의결: 재적 2/3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 후보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추위’에서 감사위원도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권 확대) • 구성: 사외이사 과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이사 등 참여금지 • (현행과 동일)

자료: 금융위원회(2011. 12. 15),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금융회사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화함.

-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금융회사의 부담가능 위험수준 결정과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표 4〉 제정(안)의 위험관리위원회 관련 주요내용

현행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감독규정에 위험관리조직 설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내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자격 등: 준법감시인에 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 소규모 금융회사 등: 직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면: 이사회 의결 - 임기: 3년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책경고, 감봉요구 이상의 조치 시 선임제한(전업권) -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반위험의 점검·관리 - 보수 및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경영성과와 별도로 운영

자료: 금융위원회(2011. 12. 15),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보수위원회⁷⁾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과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함.

-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정해진 산정방식에 의해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성과보수는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
-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책임 등과 임직원의 보수총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산 후 3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7)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해 보수위원회의 기능을 감사위원회가 대체하여 수행 가능

〈표 5〉 제정(안)의 보수체계 관련 주요내용

현행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성과보상 모범규준('10.1월)에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가 대체 가능) * 자산 2조 원 미만 금투·보험·카드, 카드외 여전사, 자산 3,000억 원 미만 저축에 대해서는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성과보상 모범규준('10.1월) - 적용 금융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지주(전체), 금투(자산 5조 원 이상), 보험(자산 10조 원 이상) - 적용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 집행간부, 본부장, 중요 의사결정수행자 등 • 직원: 외환딜링, 파생상품 관련(은행), B 트레이딩 업무(금투), 주식, 채권, 파생상품 관련(보험) - 성과연동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비율 이상 성과연동보수로 지급 • 성과연동보수 중 상당부분 이연지급 • 성과연동보수 중 상당부분 주식 등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수체계 마련 • 적용 임직원 : 시행령에서 규정 - 성과연동보수 이연지급* * 자산 2조 원 미만 금투·보험·카드, 카드외 여전사, 자산 3,000억 원 미만 저축에 대해서는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성과보상 모범규준('10.1월) - 보수지급 연차보고서 공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 결산 후 3개월 내 • 경영진·특정직원 보상에 대한 세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지급 연차보고서 공시의무* * 자산 2조 원 미만 금투·보험·카드, 카드 외 여전사, 자산 3,000억 원 미만 저축에 대해서는 미적용 - 공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위원회 구성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수 총액

자료: 금융위원회(2011. 12. 15),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⁸⁾과 위험관리기준⁹⁾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여 이들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여야 함.

8)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9) 자산운용, 업무수행, 기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위험을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기준에 따른 제반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함.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3년 임기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되며, 면직 시에는 이사회 총수 중 2/3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한 신분을 보장함.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신설함.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함.

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

- 주식의 취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변경승인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¹⁰⁾을 받아야함.
 -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들 주식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일정한 요건(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함.
 -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지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명령 가능함.
 - 대주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이행하는 날까지 10% 이상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됨.
 - 해당 명령 불이행 시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 명령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 가능함.

10) 대주주의 사망에 의한 대주주 변경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만 주식취득 후 사후신청을 허용함.

마. 금융회사 임원의 기준 및 겸직

- 금융회사 임원을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¹¹⁾로 규정함으로써 이사회가 미등기 임원에 대해 견제 및 감시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미등기 임원들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규정하며,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동 업무집행책임자에게 부여함.
-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임직원 겸직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과 금융지주회사 소속의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에서의 임직원 겸직은 가능¹²⁾함.

3. 제정(안)의 문제점 및 보험산업 관련 개선방향



- 금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선제적인 관리에 대해 정책당국이 지속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통합 금융법률로서의 장점도 있으나, 금융권역 간 특수성을 간과하는 단점도 있으므로 향후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처럼 금융회사 지배구조 논의의 결론은 획일적인 법제화보다는 금융회사의 크기, 소유구조, 권역의 특성 등이 반영된 각 권역 및 회사의 경영현실 및 전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11) 이사·감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

12) 집합투자업, 변액보험계약업무 등은 겸직이 불가함.

가. 제정(안)의 일반적 문제점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 금융지주회사,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각 금융업권 및 회사별 경영전략의 차이에 따른 세부적인 상황에 필요한 고려가 부족함.
 -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와 같이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금융회사와 대주주가 있는 여타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 발생 양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구조도 다를 수 있음.
 - 소유구조의 차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용이 달라진다는 실증분석 결과¹³⁾도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역시 각 금융업권 및 회사별로 이런 차이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가 비록 예금자·계약자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나,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아닌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규제를 통해 이미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현재 각 금융업권별로 사외이사, 내부통제, 보수체계에 관한 모범규준 등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제정(안)에서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임면 등에 대해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CEO의 책임경영과 그에 따른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금융회사 CEO는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해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므로 CEO를 통한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통제가 경영상 효율적이며,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한 CEO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13) Cassandra R. Cole, Enya He, Kathleen A. McCullough and David W. Somme(2011)r,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Implications for Risk-Taking Behavior",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 Vol. 14, No. 1, pp. 49-71.

나. 보험회사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보험회사의 경우 사업이 장기에 걸쳐 운영되고 보험부채의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 이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함.
 - 따라서 보험회사의 경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사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험부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보험회계 및 계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
 -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규율은 이러한 보험권역의 특성이 반영될 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등 제정(안)의 목적이 보다 잘 구현될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제정(안)은 상근임직원이나 비상임이사 출신이 사외이사 후보가 되기 위한 냉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회사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풀을 축소함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됨.
 - 보험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보험 고유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보험회계 및 계리와 같은 전문적 지식도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법률이 발효되면 보험산업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풀을 넓히고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형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기제한에 관한 제정(안)의 내용은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음.

-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된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요건은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계약책임 이행에 따른 문제로 파급될 수 있으므로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업법」에서 진입허가 시 대주주(특수관계인)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번 제정법이 시행되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가 보험영업과 무관한 요인의 결격사유로 유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게되어 정상적인 보험업 영위가 곤란해지고, 보유계약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대주주가 갖는 경영진 모니터링 기능의 약화에 따른 주인-대리인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으며, 대주주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구조조정의 장애요인과 건전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대주주와 다양한 특수관계인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보험계약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특성과 다른 금융회사에는 없는 선임계리사 역할을 감안하여 동태적 유지요건의 적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주주의 주식매각 등이 생긴 경우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중대한 재산상황 변동이나, 법령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시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kiri](#)